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9일, 성일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0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7차 국방위원회(2024.11.28.) 상정, 법률안심사소위원장 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성일종 의원)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협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협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최근 사이버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무기·전력지원체계를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협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 국방부가 사이버보안 위협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한 「국방 사이버보안 위협관리 지시」(행정규칙)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임.

동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미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비용추계서

없음

11.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

※첨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법률 제 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조직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이하 이 조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라 한다)에 대해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기획, 획득, 운영·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부대 또는 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조직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이하 이 조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라 한다)에 대해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② 국방정보시스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기획, 획득, 운영·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부대 또</u>

	<u>는 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u>
--	---------------------------------------